



국토교통부

보도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3. 3. 3.(금)		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	책임자	과 장 한성수(044-201-5202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영(044-201-4538)
	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우철(044-201-3504)
		담당자	사무관 김효석(044-201-459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업체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3.2) >

◆ “화물연대 파업 손실, 건설사에 떠넘긴 LH”

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, 정부가 건설사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내용 조정 등 지침을 하달했으나, LH 현장에서 석 달이 넘도록 적용되지 않고 있어, 건설사들은 수십억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될 위기

-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 공공계약 참여업체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조정,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하는 계약지침*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('22.12.5)하였다.

* ‘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’(기재부, '22.12.5)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는 해당 지침을 모든 관할 현장에 즉시 전달한 후('22.12.7), 자체 조사(1차)를 통해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, 현재까지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부과사실은 없는 상황이다.

- 향후 LH에서는 공사 중단·차질 등이 발생한 190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2차 조사('23.3월중)를 통해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정부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이 건설업계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을 「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제17조에 따라, ‘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’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건설업계에 안내('22.12.8)한 바 있으며,

* ‘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질의 회신’
(국토부, '22.12.8)

- 건설협회가 이러한 유권해석 내용을 건설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다.

- 정부는 물류 차질에 따른 불가피한 공사 중단 등으로 발생한 건설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피해 전가 방지 등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